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354, 2025고정508(병합)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이창헌(공판)	
판 결 선 고	2025.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정354』

피고인은 2024. 8.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 및 "C"에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E」 전자책 파일을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2,000여명의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20

『2025고정508(병합)』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헬스장 등의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고, 카카오톡에서 오픈채팅방 'B'와 'C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2. 13: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오픈채팅방 2개소에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저작물인 'J' 전자도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위 채팅방 참여자들이 다운로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무단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정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카카오톡 채팅방 캡쳐 이미지, 제보 이미지, 수사보고서(전자책 목차)

『2025고정50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카카오톡 채팅방 화면, C 카카오톡 채팅방 화면, G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3-2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영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영위하는 마케팅 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자료를 공유하였다고 보이는 점, 약 2,0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 공유한 것이어서 비록 얼마 후에 삭제하였더라도 저작권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과거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저작권교육을 받았음에도 다시 저작권침해 행위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후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윤규 _____